

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 :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스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
2. 작성기준일 : 2025.02.05

3. 정정사유 :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→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(97.5% Var모형사용))
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(2024.01.25 시행)
-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관련 문구 보완
-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(2025.01.01 시행)
-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
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(2024.03.01 시행)
- 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

4. 효력발생일 : 2025.03.28

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17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 관련 문구보완	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<추가>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	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
제 21 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 34 조 제 2 항 반영 보완	① 신탁업자는 --- 요구해야 한다. <추가>	① 신탁업자는 --- 요구해야 한다. 다만,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
<일괄신고서>

항 목	정정 요구·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아니오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	6. 집합투자증권은 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</u> 않습니다.	6. 집합투자증권은 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삭제>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삭제>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	
투자위험등급	아니오	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(투자 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→	㈜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<u>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</u> 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㈜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<u>실제 수익률 변동성</u> 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
		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(97.5% Var 모형 사용))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며, ---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---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투자자 유의 사항	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며, ---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---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 - 원본손실위험		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며, 특히 ---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며, 특히 ---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삭제> 보호되지 아니며, 특히 ---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삭제>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.
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	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 관련 문구보완	②동일종목투자제한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<추가>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	②동일종목투자제한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	또한, 이 투자신탁은 ---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 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<생략>	또한, 이 투자신탁은 ---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 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삭제> 보호되지 아니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삭제> 보호되지 않습니다. <현행과 동일을 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아니오	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(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→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)	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. 설정 후 3년이 경과할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재산정될 예정이며, 이 때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주)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6 등급 중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<변경 전 1>	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(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, 97.5% VaR 모형 사용)은 38.89% 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<변경 후 1>
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(2024.03.01 시행)	<u><추가></u>	(5)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			
			중도환매 가능여부	중도 환매 불가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 환매 허용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			
14.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 한 사항 나. 과세 (1)투자신탁에 대한 과세·별 도의 소득과 세 부담이 없 는 것이 원칙	소득세법 제 57 조의 2 및 법인 세법 제 57 조 의 2 개정사항 반영 (2025.01.01 시행)	<p>다만, 외국인원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p> <p>환급세액 = 외국인납부세액 x 환급비율*</p> <p>*환급비율 : (과세대상소득금액/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) 단, 환급비율>1 이면 1, 환급비율 <0 이면 0으로 함</p>	<u><삭제></u>			
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아니오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			
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아니오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2.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) 집합투자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		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 34 조 제 2 항 반영 보완	<p>(2) 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</p> <p>② 집합투자자산--요구하여야 합니다.</p> <p><u><추가></u></p>	<p>(2) 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</p> <p>② 집합투자자산--요구하여야 합니다.</p> <p>다만,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.</p>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2)채권평가회사		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	<p>회사명: 한국자산평가(주)</p> <p>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88 삼환빌딩 4층</p>	<p>회사명: 한국자산평가(주)</p> <p>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본관 11층</p>

<변경 전 1>

위험등급 분류는 (주)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,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위험등급	분류기준	상세설명(예시)
1	매우 높은 위험	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2	높은 위험	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3	다소 높은 위험	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4	보통 위험	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5	낮은 위험	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6	매우 낮은 위험	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
1. “고위험자산”은 주식,상품(Commodity), REITs, 투기등급채권(BB+등급 이하),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2. “중위험자산”은 채권(BBB-등급 이상), CP(A3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3. “저위험자산”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4.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한해지여부·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
5.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·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함

■ 수익률 변동성 기준

위험등급	분류기준	표준편차
1	매우 높은 위험	매우 높은 위험
2	높은 위험	높은 위험
3	다소 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
4	보통 위험	보통 위험
5	낮은 위험	낮은 위험
6	매우 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
1. “수익률 변동성 기준”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변경 후 1>

(1)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

변경일	위험등급	변경사유
2025.03.28	2등급	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산정기준 변경

(2) 수익률 변동성 기준

위험등급	분류기준	97.5% VaR
1	매우 높은 위험	50% 초과

2	높은 위험	50% 이하
3	다소 높은 위험	30% 이하
4	보통 위험	20% 이하
5	낮은 위험	10% 이하
6	매우 낮은 위험	1% 이하

1) “수익률 변동성 기준”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시 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) “97.5% VaR”는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$\sqrt{250}$)를 곱해 산출하며, VaR(Value at Risk)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. 상기 표상 VaR값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(신뢰구간 97.5%)을 의미합니다.